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제27조(장학금)에 의하여 원생들에게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수립하여 학문연구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고,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대학원의 원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장학금의 대상자는 예외로 한다.

1.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B⁰(3.0)이상인 자로서 F학점 과목이 없는 자(다만, 경건회 제외)
2. 직전학기 중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성적정정기간 이후의 성적정정으로 인한 대상자는 제외한다.
4. 교내장학금은 각 대학원별로 지정된 수업연한의 최종학기까지만 지급한다.

제3조 (신청) ①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4조 (대학원위원회) ①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가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학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
2. 장학금 규정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와 선발기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번호	장학종류	선 발 기 준	구비서류 및 선발방법
1	봉사장학금	① 원우회장 ② 원우회 부회장 ③ 원우회 총무	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서 F학점 과목이 없는 자 ② 장학금신청서 1부
2	목회자장학금	① 본교단 단독목회자	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② 재직증명서 1통 (지방회장 발행) ③ 장학금신청서 1부
3	특별장학금	① 특수대학원 장학금 ② 본 법인 및 교직원 직계가족 ③ 본 대학 교직원 ④ 일반대학원장학금(석사) ⑤ 박사과정 장학금 5,6학기 등록자로서 다음 사항에 이상이 없는 자 1.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로서 F학점 과목이 없는 자 2. 직전학기 중 징계사실이 없는 자 3. 성적정정기간 이후에 성적정정으로 인한 대상자는 제외 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⑦ 본교출신자 입학금 면제 ⑧ 사랑장학금(경제사정 곤란자) ⑨ 복수학위 이수자[M.Div.과정 재학생(신학반)으로 Th.M.과정 복수학위 이수자] ⑩ 기타 대학원위원회가 선정하는 자	① 장학금신청서 1부(공통) ② 재직증명서 1부 (2항, 3항 해당자) ③ 2항의 직계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6항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연금가입증명서 1부 ⑤ 8항 해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중 택1 M.Div.과정은 장학위원회 별도 기준 적용 ⑥ 9항 해당자는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4	성적장학금	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인 자로 C학점이하의 과목이 없어야 함	일반대학원 성적 최우수자 신학대학원 M.Div.과정 각 반별 성적 최우수자
5	조교장학금	① 근무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선발한 자 ② 본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재학생인 자	①조교신청서 1부 ②교회출석확인서 1부 ③재학증명서 1부
6	학술장려장학금	논문신청자 및 대상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1급) 및 등재후보지 등재 관련 증빙서류 1부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제8조 (지급기준) 전 조의 각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번호	장학종류	구 분	지급액	적용
1	봉사장학금	① 원우회장 ② 원우회 부회장 ③ 원우회 총무	수업료의 70% 수업료의 70% 수업료의 60%	각 대학원
2	목회자장학금	① 본 교단 단독목회자	수업료의 50% 수업료의 40%	신학대학원(Th.M.) 신학대학원(M.Div)
3	특별장학금	① 특수대학원 장학금	수업료의 40%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Th.M, M.A, 프 라임대학원 음악전공 제외)
			수업료의 30%	신학대학원 Th.M, M.A과정
			수업료의 25%	프라임대학원(음악전공)
			수업료의 20%	교원양성과정(미용교육, 연극 영화교육전공)
			수업료의 20%	교원양성과정(미용교육, 연극 영화교육전공)
		② 본 법인 및 교직원 직계가족	수업료의 50%	일반대학원(석사), 신학대학원 (Th.M)
		③ 본 대학 교직원	입학금 수업료의 70%	특수대학원
		④ 일반대학원장학금(석사)	수업료의 40%	일반대학원 석사
		⑤ 박사과정(5-6학기)	수업료의 20%	일반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수업료의 20%	일반대학원 박사
⑦ 본교 출신자 입학금 면제	입학금	각 대학원 신입학자, 편입학자		
⑧ 사랑장학금(경제사정곤란자)	수업료의 50%	각 대학원 석사 (Th.M. 및 M.A.과정, 교육 대학원 미용교육 및 연극영 화교육전공, 프라임대학원 음악전공 제외)		
	수업료의 40%	신학대학원 Th.M., M.A.		
	수업료의 30%	교육대학원(미용교육, 연극 영화교육전공), 프라임대 학원(음악전공)		
	수업료(M.Div. + Th.M.)이수자 장학금	수업료(M.Div. + Th.M.)의 50%	M.Div.과정 재학생(신학반)으로 Th.M.과정 복수학위 이수자	
⑨ 기타 대학원위원회가 선정하는자		각 대학원		
4	성적장학금	성적 최우수자	수업료의 70%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M.Div.과정
5	조교장학금	비전일제조교	일정액	각 대학원
6	학술장려장학금	논문신청자	일정액	각 대학원

※ 봉사장학금은 각 소속 대학원 재학생이 8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우회 부회장 1인까지, 1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총무 각 1인에게도 해당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한다(단, 재학생이 20명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제9조 (지급방법) ①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등록시 납부금에서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정액비율로 지급하되 10,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산하여 지급한다.

③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자격상실 및 반환조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 상실자가 장학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1. 제적자
2. 소정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군입대 휴학 또는 건강상 휴학명을 받은 자 이외의 휴학자

제11조 (이중 수혜금지) ①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때에는 가장 많은 금액의 장학금을 적용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지급을 할 수 있다.

1. 지정 장학금
2. 근로로 인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3. 기타 대학원위원회가 선정하는 자

제12조 (지급중지) 총장이 예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해 지급한다.

- ① 봉사장학금
- ② 본 교단 단독 목회자 장학금
- ③ 특별장학금

제13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8조 지급기준의 특별장학금 중 ①항(타 대학 출신자)은 1999학년도 3월 입학생까지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 제9조)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전에 각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장학규정을 적용하되, 제8조 표의 3번 ⑤항에 명시된 본 법인교직원 및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제8조의 봉사장학금은 각 대학원 재학생이 20명 이상은 원우회장 1인, 30명 이상은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각 1인, 40명 이상은 원우회장, 원우회 부회장, 원우회 총무 각 1인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전에 각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장학규정을 적용하되, 제8조 표의 3번 ①항, ⑥항, ⑨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 제8조의 봉사장학금은 각 대학원 재학생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장학금을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8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8조의 3번 ⑫항)은 2011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각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장학규정을 적용하되, 제7조 표의 3번 ⑧항, 제8조의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각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입학당시의 장학규정을 적용하되, 제7조 표의 3번 ⑧항 및 표의 4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대학원 장학금에 관한 규정(7-2-4)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9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7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